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7일, 박준태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2024. 11.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1. 19.)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2. 3.)

상정, 축조심사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8. 19.)

상정, 축조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1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3. 1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박준태의원)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 리로 하여금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는 수사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법제화하고 있음. 한편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마약류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위장수사를 통하여 마약류, 불법무기 등의 유통채널이었던 다크넷을 검거한 사례가 있는 등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경찰, 해양경찰, 검찰 등의 마약범죄수사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신분위장수사,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등을 추가하는 등 수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상응하는 기본권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개정안은 현행법 제3조·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죄를 “마약

류범죄”로 약칭하고, 마약류범죄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 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여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수사기법으로, 현행법 체계를 살펴보면 형사사법 절차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체계의 특례를 찾아볼 수 있음.

□ 범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상호 간 합의에 의한 범죄 등은 일반적인 수사 방법으로 범인 검거나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바, 실무적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성범죄 외에도 마약범죄, 뇌물범죄, 조직범죄, 도박범죄 등의 수사 과정에서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는 등의 수사기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사는 ‘임의수사’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음.

- 마약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마약 판매의 범의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에게 접근하여 마약을 구매하고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한 후 마약 판매업자를 검거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사례임.

□ 이러한 수사기법은 단속과 처벌의 측면에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수사의 신의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인정 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고,

□ 대법원은 위장수사와 관련하여 범의유발형 수사와 기회제공형 수사로 구분하면서,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경우는 함정수사로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범의유발형 수사를 함정수사로 표현하면서 위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반면,

-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기회제공형 수사에 대해서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태도를 보임.
- 이에 실무적으로는 판례를 바탕으로 위장수사를 하고 있으나 판례는 범죄자의 범의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어 실무에서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를 명확화하기 어렵고 수사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상존하는바, 최종적인 수사의 적법성이 법원의 사후판결을 통해 확정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권익보호와 수사기관의 책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점이 있음.
- 또한, 위장수사의 잠재적 침익성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수사권 행사의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해당 수사기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두고 관련된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임.
- 최근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며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중독자 중심의 마약류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다르게 피해 신고가 거의 없어 담당 수사관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단서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을 고려할 때, 마약류 범죄에서 신분위장수사와 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해당 수사방식은 수사의 신의칙을 위반하여 적법절차원칙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인정 여부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고,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규율하는 방식 및 체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학계 등에서는 i) 일부 중대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신분위장수사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도입하자는 견해, ii) 비밀수사관 제도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규정하자는 견해, iii) 개별법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각각 마련하자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음.

□ 또한,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이 마약류의 취급·관리 및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주무 부처가 식약처와 복지부인데,

□ 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내용은 마약류 범죄 수사방식의 특례로서 실제 마약류 범죄의 수사기관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인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위장수사와 비공개수사를 규정하는 것이 실무상 적정한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안 제4조의6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해야 하는바, 해당 상임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관으로 하는 보건복지

위원회인지, 또는 수사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타 상임위원회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의 특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특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두 건의 법률 모두 법무부 소관임.

□ 한편, 세 건의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9까지와 유사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약류 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그 특성과 수사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마약류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마약류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와는 달리 다부처가 공동으로 수사하고 있어 공조의 필요성이 높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장 모두에서 밀수·판매·운반·투약 등 유통과정이 수반됨에 따라 범죄의 행위자가 다양하고 그 양태가 복잡한 등의 특징이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